붙임 2. 3개팀 초안(요약)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계획 초안(2006년-2008년) (요약)

= 목 차 =

1. 업무전략계획 작성 목적

2. 위원회의 비전(Vision)

3. 위원회의 사명(Mission)

4. 위원회의 운영원칙(Operational Principles)

5. 2기 위원회의 5대 목표(Goals)

6. 실천계획(Strategies)

업무전략기획팀

1. 업무전략계획 작성 목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2001. 5. 24.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수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1]"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와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차별적 관행들을 조사하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동안 낯설어 보였던 '인권'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알리고, 이를 통해 위원회의 존재 의의를 사회에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위원회는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위원회의 사명과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본 업무전략계획은 이러한 전략계획의 일부로서, 향후 3년간의 위원회 운영방향과 각 업무영역별 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 위원회의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되는 사회-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사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2]"이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될 것이다.

---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2) 위원회의 비전은, 위원회 설립 초기부터 슬로건으로 사용하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과 주요국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전의 핵심적 내용-"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되는 사회"를 결합하였다.

3. 위원회의 사명(Mission)

우리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모두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명[3]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1. 인권에 관한 리더쉽을 발휘한다.

4. 위원회의 운영원칙(Operational Principles)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sm), 다양성(Diversity),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합리성(Rationality), 예의와 헌신(Courtesy and Commitment)

5. 2기 위원회의 5대 목표(Strategic Goals)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목표 3.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

목표 4. 인권가치의 보편화를 위한 체계적 인권교육 및 홍보

목표 5. 위원회 위상 및 역량 강화

3) 위원회의 사명은, '국가인권기구'로서의 본질적 사명과 인권문제를 다루는 다른 국가기구(사법기관 등)나 혹은 NGO 등과 차별화되는 성격으로부터 도출하였다. 본질적 사명으로부터 "권력에 대한 감시", 다른 국가기구와 차별되는 점으로서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의 실현", 그리고 NGO 등과의 차별적 성격으로부터 "인권에 관한 리더쉽 발휘"를 도출하였음.

6. 실천계획(Strategies)

목표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위원회의 주된 관심 영역이라는 사실을 위원회는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위원회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이들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 권리가 보호·증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세부목표 1.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실천계획 1.1.1. 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실천계획 1.1.2.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실천계획 1.1.3. 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사회권 연구, 제3세대 인권 연구 등)

세부목표 1.2. 차별시정 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실천계획 1.2.1. 차별금지법 제정

실천계획 1.2.2. 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실천계획 1.2.3. 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세부목표 1.3.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실천계획 1.3.1. 소수자 및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상담 체계 구축

실천계획 1.3.2. 소수자 및 약자 인권보호를 위한 소송지원 체계 구축

실천계획 1.3.3. 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추구하는 인권이 국내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해야 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외국인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제도·정책과 관행이 헌법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국내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수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3년간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이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제도되도록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세부목표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실천계획 2.1.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실천계획 2.1.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 협의 및 제도개선

실천계획 2.1.3. 인권침해 가능 기관의 관행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세부목표 2.2.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실천계획 2.2.1. 인권현안 발굴 체계 확립

실천계획 2.2.2. 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실천계획 2.2.3. 주요 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

세부목표 2.3.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

실천계획 2.3.1. 주요 국제 인권논의에의 적극 참여

실천계획 2.3.2. 국제인권기준에 저촉되는 국내법 실태조사

실천계획 2.3.3. 국내법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 체제 구축

목표 3. 권리구제의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 구제와 관련된 모든 행동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며, 그 과정 또한 인권친화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위원회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그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가 인권 현장에 밀착되어 활동해야 한다는 사실도 깊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전개할 것이다.

세부목표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실천계획 3.1.1. 필터링 기능 강화

실천계획 3.1.2. 사건처리 체계 정비

실천계획 3.1.3. 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 및 실시

세부목표 3.2. 인권 친화적인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실천계획 3.2.1. 인권사각 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실천계획 3.2.2. 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실시

실천계획 3.2.3. 진정인 만족도 제고

세부목표 3.3. 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실천계획 3.3.1.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실천계획 3.3.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실천계획 3.3.3. 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활성화

실천계획 3.3.4. 업무유관 기관 및 단체와의 실무차원의 협력 강화

목표 4. 인권가치의 보편화를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는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과 홍보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과 홍보가 위원회의 주요 사명 중에 하나임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홍보가 사회 각 부문의 협력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사회적 기반의 구축과,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종합적인 인권 홍보 전략의 구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회구성원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해 향후 3년간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목표 4.1. 인권교육 기반 구축

실천계획 4.1.1. 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실천계획 4.1.2. 인권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

실천계획 4.1.3. 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세부목표 4.2. 다양한 인권교육과정의 구축 및 시행

실천계획 4.2.1. 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실천계획 4.2.2. 공공부문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실천계획 4.2.3.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실천계획 4.2.4.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세부목표 4.3.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기능 강화

실천계획 4.3.1.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실시 지원

실천계획 4.3.2. 자유권, 사회권, 차별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권홍보전략 수립 및 실시

실천계획 4.3.3. 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목표 5. 위원회 위상 및 역량 강화

이상의 사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국민들로부터 인권수호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식되도록 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영역에서 활동하는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들과 전략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2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전개한다.

세부목표 5.1. 위원회 위상 및 역량 강화

실천계획 5.1.1. 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실천계획 5.1.2.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실천계획 5.1.3. 위원회 영역별 기능 통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실천계획 5.1.4. 지방사무소 확산 및 역량 강화

세부목표 5.2. 위원회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

실천계획 5.2.1. 위원회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 확립

실천계획 5.2.2.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외부 의견수렴체계 확립

실천계획 5.2.3. 위원회 구성원의 윤리의식 고양/강화

실천계획 5.2.4. 인권정보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식관리 시스템(Knowledge Management System) 구축

세부목표 5.3. 국내외적 협력체제 강화

실천계획 5.3.1. 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 협력체제 구축

실천계획 5.3.2. 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및 지도력 발휘

실천계획 5.3.3. 인권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체제 강화

실천계획 5.3.4. 아시아지역의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지위 및 역할 강화

비전 (Vision)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며 증진되는 사회

⇩

사명 (Mission)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명에 헌신한다.

1.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모든 권력을 감시한다.
1.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실현한다.
1. 인권에 관한 리더쉽을 발휘한다.

⇩

운영원칙 (Operational Principles)

독립성(Independence), 전문성(Professionalism), 다양성(Diversity), 투명성(Transparency), 책무성(Accountability), 합리성(Rationality), 예의와 헌신(Courtesy and Commitment)

⇩

5대 목표 (Goals)

1.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기능 강화	2. 국제적 수준의 인권 제도 및 관행의 구축	3. 권리 구제의 실효성 및 만족도 제고	4. 인권가치의 보편화를 위한 체계적 인권교육 및 홍보	5. 위원회의 위상 및 역량 강화

⇩

실천계획 (Strategies)

1.1.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1.1.1.사회권 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1.1.2.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1.1.3.인권영역 확장을 위한 연구역량 강화(사회권 연구, 제3세대 인권 연구 등)

1.2.차별시정기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

1.2.1.차별금지법 제정

1.2.2.인권위법상 차별 사유별/영역별 판단기준 정립

1.2.3.조정기능 활성화 등 차별 피해자 구제방법의 다각화

1.3. 상담 및 지원체계 구축

1.3.1.소수자 및 약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상담 체계 구축

1.3.2.소수자 및 약자 인권 보호를 위한 소송 지원 체계 구축

1.3.3.사유별/영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활용

2.1.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2.1.1.정부의 인권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2.1.2.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연구협의 및 제도개선

2.13.인권침해 가능 기관의 관행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

2.2.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2.2.1.인권 현안 발굴 체계 확립

2.2.2.정책개발 및 대응능력 제고

2.2.3.주요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 의견개진

2.3.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법 정비

2.3.1주요 국제 인권논의에의 적극 참여

2.3.2국제인권기준에 저촉되는 국내법 실태조사

2.3.3국내법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 체제 구축

3.1.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체계 확립

3.1.1.필터링 기능 강화

3.1.2.사건처리 체계 정비

3.1.3.대안적 분쟁해결 모델 개발실시

3.2.인권 친화적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3.2.1.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서비스 제공

3.2.2.인권친화적인 조사구제 절차 및 기법 개발실시

3.2.3.진정인 만족도 제고

3.3.인권침해 예방 및 현장성 강화

3.3.1.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위한 법제도 개선

3.3.2.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 활동 강화

3.3.3.기획조사(실태조사, 방문조사, 직권조사) 기능 활성화

3.3.4.업무유관 기관/단체와의 실무차원의 협력 강화

4.1.인권교육 기반 구축

4.1.1.인권교육 실태조사 및 연구기반 조성

4.1.2.인권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

4.1.3.인권교육 기본계획 수립

4.2.다양한 인권교육과정의 구축 · 시행

4.2.1.학교교육과정에 인권교육 포함

4.2.2.공공부문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4.2.3.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 · 보급

4.2.4.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4.3.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기능 강화

4.3.1.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실시 지원

4.3.2.자유권, 사회권, 차별문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인권홍보전략 수립·실시

4.3.3.위원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홍보 강화

5.1.위원회의 위상 및 역량 강화

5.1.1.인권위원의 역할 강화

5.1.2.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5.1.3.영역별 기능 통합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5.1.4.지방사무소 확산 및 역량 강화

5.2.위원회의 투명성 · 접근성 제도

5.2.1위원회 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확립

5.2.2.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외부 의견 수렴 체계 확립

5.2.3.위원회 구성원의 윤리의식 고양/강화

5.2.4.인권정보 활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5.3.국내외적 협력체제 강화

5.3.1.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협력체제 구축

5.3.2.국내외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의 전략적 협력체제 구축 및 지도력 발휘

5.3.3.인권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협력체제 강화

5.3.4.아시아지역의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지위 및 역할 강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강화 전략 계획(요약)

I. 위상강화 전략계획 개요

위원회는 설립 5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위원회의 사명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상을 새로이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위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위원회법이 부여한 위원회의 법률적 위상을 검토하고, 위원회 위상과 관련한 내·외부 환경의 요구를 분석하여 위원회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전략을 도출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

□ 위원회가 추구하는 위상

○ 인권문제를 적극적·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믿음직한 대안적 권리구제기관
○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회적 토대(법, 제도, 정책 등) 발전을 이끄는 기관
○ 인권 영역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발휘하는 능력 있는 인권전문 기관

□ 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전략적 목표

[전략목표 1] 독립성 강화

국가인권위원회가 객관적,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걸맞는 정체성과 지위를 분명히 하고, 정부, 입법부, 사법부, 시민사회 영역, 시장 등 모든 영역으로부터 독립·협력·긴장의 관계를 구축, 유지한다.

[전략목표 2] 권리구제 변별성 확보

법치주의에 기반하되, 법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규범적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동의와 설득, 화해를 통한 상생의 갈등해결 패러다임을 계발하여 기존의 여타 권리구제기관과의 변별성을 명확히 한다.

물론 여기에는 위원회만이 접근가능한 인권 취약 영역을 발굴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보호·증진하고, 국민들에게 쉽고 빠르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여 권리구제영역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자성, 고유성을 확보한다.

[전략목표 3] 권고 실효성 강화

위원회의 활동이 국민 개개인의 인권과 국내외 인권상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는 위원회의 무소속·독립·권고형 국가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한다.

□ 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전략 계획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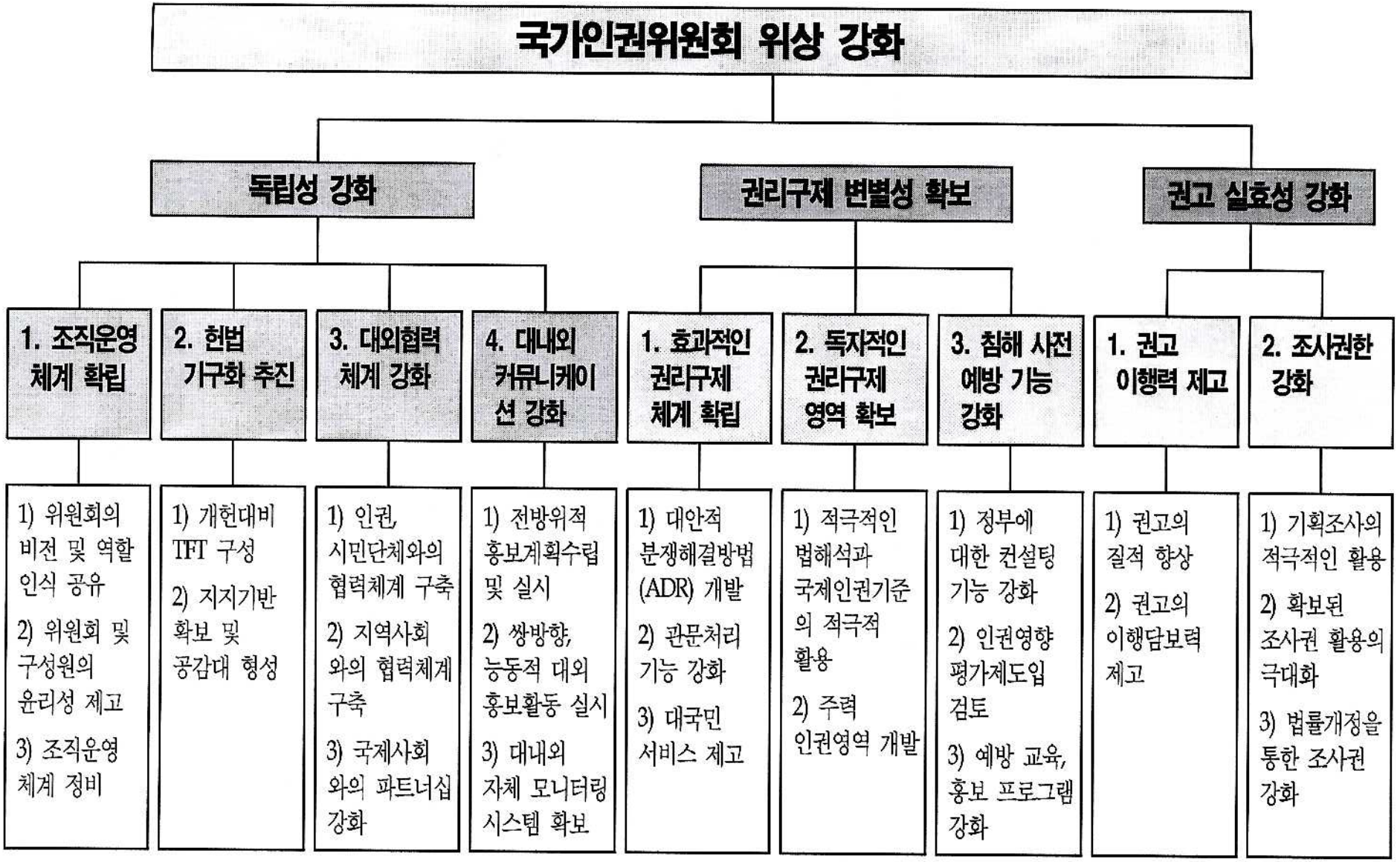

Ⅱ. 위상강화 세부 전략계획

전략적 목표 1 : 독립성 강화

○ 전략적 계획 1 : 조직운영체계 확립

◈ 실행계획 1 - 위원회의 비전과 역할 인식 공유

프로그램 1) 위원회 정체성 및 역할 해설서 발간 및 구성원 교육

프로그램 2) 연례 리더십 전략 워크샵

프로그램 3) 위원회 전체 워크샵

◈ 실행계획 2 - 위원회 및 구성원의 윤리성 제고

프로그램 1) 국가인권위원회 윤리강령 개발

프로그램 2) 대외 업무 지침 개발

◈ 실행계획 3 - 조직운영 체계 정비

프로그램 1) 위원회 운영 관련 법령 검토 및 개정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체계 검토(인권위원 전원 상임위원화, 위원 및 위원장 임명방식 등)
- 사무처 조직 및 운영체계 검토(사무총장 정무직화, 개방형 직위확대를 통한 전문인력 유입,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통한 인권직렬 신설)

프로그램 2) 위원회 독립 청사 확보

○ 전략적 계획 2 : 헌법기구화 추진

◈ 실행계획 1 - 개헌 대비 TFT 구성

프로그램1)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 및 마스터플랜 마련

프로그램2) 헌법기구화에 대한 논리 개발

◈ 실행계획 2 - 지지 기반 확보 및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1) 핵심인사군(群) 운영

○ 전략적 계획 3 : 대외 협력체계 강화

◈ 실행계획 1 - 인권·시민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1) 인권 · 시민단체 자문회의(consultation) 개최

프로그램2) 차별행위 방지를 위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와의 협력관계 구축

- 차별 예방 지침서(guideline) 제작 및 배포
- 민간기업 인사 담당자 대상 차별 예방 교육 실시
- 인권 친화 기업 발굴 및 선정
- 차별예방협의회 구성

프로그램3) 대학, 학계와의 협력 강화

- 인권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추진
- 연구용역사업을 통한 학계와의 협력관계 구축

◈ 실행계획 2 -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1) 위원회의 지역사무소 역할 강화

-지역사무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기술적 지원 강화

-지역의 인권현안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 연락체계 활성화

-지역사무소를 통한 해당 지자체 및 지역NGO와의 협력사업 추진

프로그램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 추진

프로그램3) 지역 NGO와의 협력체계 강화

- 지역NGO 정책자문회의 개최

◈ 실행계획 3 - 국제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프로그램1) 상시적 커뮤니케이션 채널 마련

- 국제 연락관(International Liaison) 설치
- 국제 인턴십(International Internship)제 도입
- 국제 기구간 e-Group 구축 및 참여

프로그램2) 공동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

프로그램3) 국제 인권단체와의 인적 교류 및 연수기회 확대

프로그램4) ICC, APF 의장국 수임

○ 전략적 계획 4 : 대내 · 외 커뮤니케이션 강화

◈ 실행계획 1 - 전방위적 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

프로그램1) 통합적 홍보 전략계획 수립

프로그램2) 위원회의 best practice 발굴 및 홍보

프로그램3) 위원회의 공간을 활용한 상시적 홍보시스템 운영

- 위원회 방문객들을 위한 방문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실행계획 2 - 쌍방향, 능동적 대외 홍보활동 실시**

프로그램1) 언론 대상 간담회, 브리핑 수시 운영

프로그램2) Web-zine과 mailing-list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프로그램3) 효과적인 홍보물 개발 및 제작

프로그램4)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명예 인권위원, 시민인권조사관, 청소년 인권 모니터단
- 위원회 평가단 (위원회 활동 평가, 과제 도출 등)

◈ **실행계획 3 - 대내외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확보**

프로그램1) 전문가 집단 및 관계기관, 시민사회, 국민 일반 대상 수시 이미지 조사

전략적 목표 2 : 권리구제 변별성 확보

○ 전략적 계획 1 : 효과적인 권리구제 체계 확립

◈ **실행계획 1 - 대안적 갈등분쟁방법(ADR) 개발**

프로그램 1) 대안적 분쟁해결(ADR) 모델 개발

- 외국NI 등의 ADR 모델 분석
- 위원회에 적합한 ADR 모델 개발
- ADR에 적합한 사건 유형 분류 및 Case 분석
- ADR 활용을 위한 매뉴얼, 가이드라인 마련

프로그램2) 인적자원의 전문성 개발 및 축적

- 구성원 대상의 ADR 교육 : 외부강사 초청교육 또는 교육 package 도입 운영
- ADR 사례집 발간

◈ **실행계획 2 - 관문처리 기능 강화**

프로그램1) 관문처리시스템(Gate Keeping System) 활성화

- 타 기관 안내 기능 강화
- 관문단계에서의 조정 활성화
- 관문단계에서 각하사건 처리
- 면전진정 제도의 개선

프로그램2) 인권상담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력 강화

- 위원회의 조사·구제기능에 대한 인권단체 대상의 홍보활동
-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의 권리구제기능에 대한 정보 공유

-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인권단체들에 접수된 사건을 진정접수
- 위원회 접수된 진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권단체 안내
- 교환된 사건에 대한 결과 공유, 사후 관리 등

프로그램3) 기획조사 및 직권조사 역량 집중

◆ 실행계획 3 - 대국민 서비스 제고

프로그램1) 고객만족시스템(Customer Satisfaction System) 개발
-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 진정인 고충 처리 서비스 제공
- 인권보호 기동반 운영

프로그램2) 직원대상 서비스 교육 실시

○ 전략적 계획 2 : 권리구제의 독자적 영역 확보

◆ 실행계획 1 - 적극적인 법해석과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활용

프로그램 1) 관련 국내법 해석 및 판례 분석

프로그램 2) 국제인권기준 및 사례 수집, 분석, 지속적인 up-date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consultation) 운영
- 영역별 DB 구축

프로그램 3) 광범위한 실태조사(차상위 계층 등)

◆ 실행계획 2 - 위원회 주력 인권영역 개발

프로그램1) 주력 인권영역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프로그램2) 주력 인권영역 선정 및 전략 수립

○ 전략적 계획 3 : 권리 침해 사전 예방 기능 강화

◆ 실행계획 1 - 정부에 대한 컨설팅 기능 강화

프로그램1)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연구 및 권고 기능 강화

프로그램2) 국민제안 창구 마련

◆ 실행계획 2 - 인권영향평가제 도입 검토

프로그램1) 외국의 인권영향평가제 사례 연구

프로그램2)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계획 수립

◆ 실행계획 3 - 예방 교육·홍보 프로그램 강화

프로그램1) 인권침해,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제작, 보급

프로그램2) 인권침해, 차별 예방 교육 컨텐츠 개발 및 보급

전략적 목표 3 : 권고 실효성 강화

○ 전략적 계획 1 : 권고 이행력 제고

◈ 실행계획 1 - 권고의 질적 향상

프로그램1) 국제인권기준의 적극적 활용

- 영역별 국제 인권기준 확보 및 적용
-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

프로그램2) 권고안의 질적 향상

- 인권개선 실효성 및 실행가능성 높은 권고안
- Positive형 권고안

프로그램3) 위원회 인적자원(직원, 위원 등)의 전문성 제고 및 축적

◈ 실행계획 2 - 권고의 이행 담보력 제고

프로그램1) 인권재판소 설치

프로그램2) 권고 수용여부에 대한 일정 기한내 회답의무와 이행계획서의 제출

프로그램3) 행정부 및 여타 국가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

프로그램4) 행정부 및 여타 국가기관과의 인권정책협의회 활성화

프로그램5) 청와대 인권정책비서관 신설

○ 전략적 계획 2 : 조사권한 강화

◈ 실행계획 1 - 기획 조사의 적극적인 활용

프로그램1) 기획조사 활성화

프로그램2) 기획조사와 홍보전략과 연계

◈ 실행계획 2 - 확보된 조사권 활용의 극대화

◈ 실행계획 3 - 법률개정을 통한 조사권 강화

전략 과제 1 : 고객만족 시스템 도입

전략 과제 2 : 위기관리전략 수립

역량강화 전략(요약)

□ 역량강화 전략 수립 배경

○역량강화팀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는 신뢰받는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조직의 역량강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음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역량강화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점검하고
1) 구성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2)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표준화·정형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3) 직무수행을 통해 생산된 지식들이 구성원 전체가 제대로 공유되고 있는지,

○현상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위원회의 역량강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음

□ 문제점

◎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필요요소들의 진단 결과,

1) 교육·훈련의 체계화 미흡
- 간헐적인 교육은 시행되었으되,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직무소양교육과 인권소양교육,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등 체계화된 교육이 시행되지 못했고
- 교육의 지속성, 현장성, 업무관련성, 전문성 또한 기대하기 어려움

2) 업무수행의 표준화, 정형화 모듈 미흡
-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 신규진입이나 전보, 승진 등 인사이동 발생시 효과적인 업무교육이 어렵고,
- 업무수행방식에 대한 계속적인 보완과 수정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텍스트가 없으므로 업무 혁신이 구체화되기 어려움

3) 생산된 각종지식의 공유기반 미흡

- 지식흐름이 원활치 않아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 공유가 쉽지 않음
- 공식문서 기록 이외의 개인의 경험, 노하우, 전문지식, 확보된 관련정보 등을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인트라넷 시스템상의 지원체제 부재
- 현행 인트라넷 상의 지식관리 방식은 공급자 중심의 검색체계임으로 인해 원활한 지식공유가 어려운 구조임

□ 역량강화 전략의 주요 내용

◎역량강화 전략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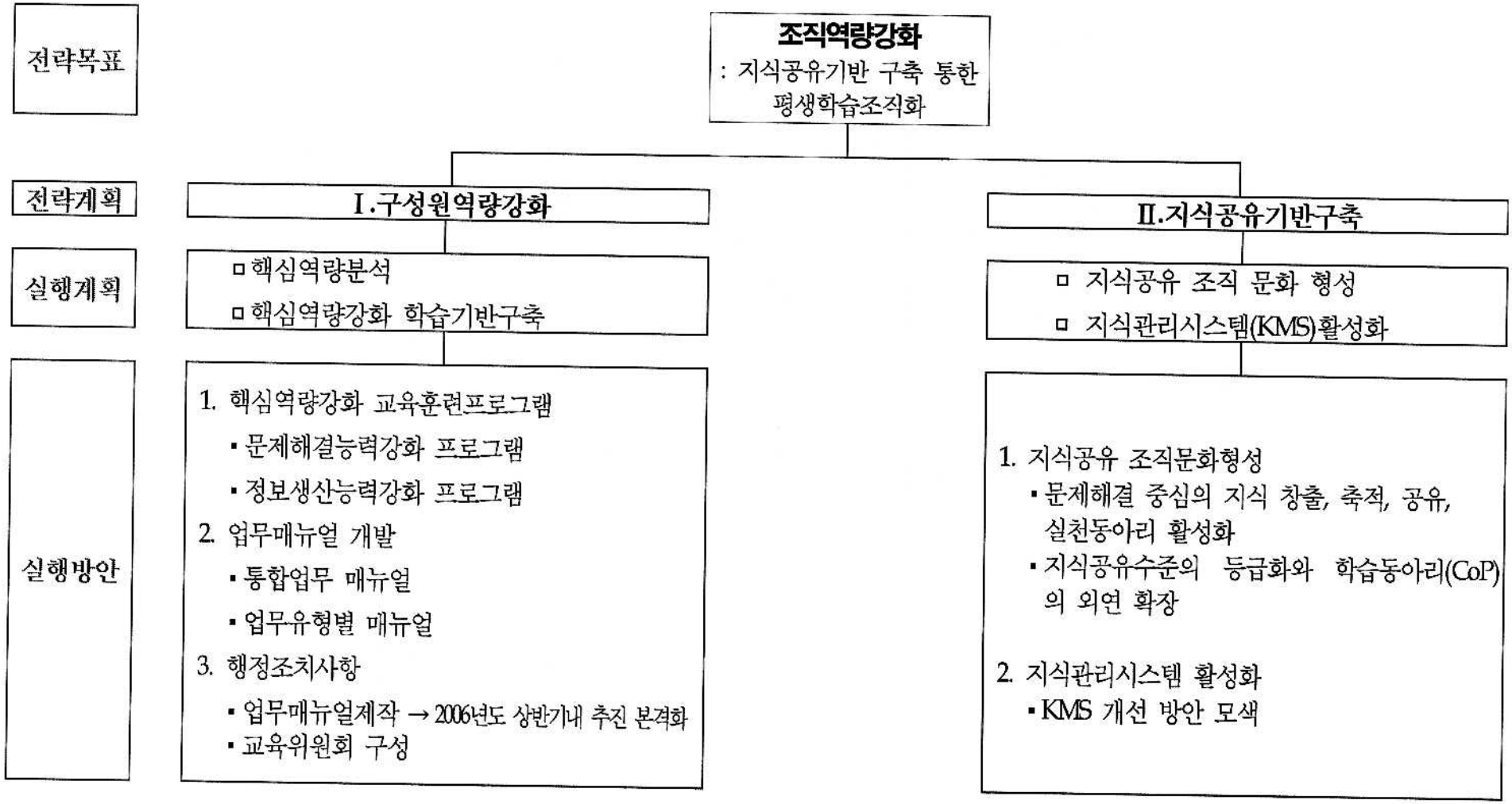

◎전략계획의 세부내용

[전략계획 1] 핵심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 체계화 전략수립

실행방안 **1-1**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원칙 제시

실행방안 **1-2** 조사구제능력, 정책연구개발능력, 대내외 협력능력, 인권교육 능력 등 직무별 핵심역량강화 항목 개발과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안

실행방안 **1-3** 교육위원회 등 교육전담기구 구성을 2006년도 상반기 사업 제안

[전략계획 2] 업무매뉴얼 개발

실행방안 **1-1** 통합업무 매뉴얼을 포함한 업무유형별 매뉴얼의 개발 제안

실행방안 **1-2** 매뉴얼 개발의 모델 제안

실행방안 **1-3** 매뉴얼 개발을 2006년도 본격 추진 사업으로 제안

[전략계획 3] 지식공유기반 구축

실행방안 **1-1** 지식공유에 친화적인 조직문화 형성

실행방안 **1-2** 문제해결 중심의 학습동아리(CoP : Community of Practice) 활성화 방안 제시

실행방안 **1-3** 지식공유의 외연 확대
(조직내부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집단 ⇨전체국민)

실행방안 **1-4** 지식공유시스템(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재정비

붙임 3.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요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요

1. 워크숍 개최 필요성

○ 위원회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 활동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견과 바람을 청취하고 이를 발전기획안에 반영

○ 발전기획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추진동력 형성

○ 인권단체의 워크숍 개최 요구 수렴

2. 워크숍 개요(잠정)

가. 일 시 : 11. 21.(월) 10:00 - 18:00

나. 장 소 : 서울 여성 프라자 (대방동 소재)

다. 참석 대상: 약 100명 내외

○ 위원회 임직원 : 위원장, 인권위원 및 참가 희망 직원

○ 발전기획단 : 단장(사무총장), 3개팀(업무전략기획팀, 위상강화기획팀, 역량강화기획팀) 팀장, 내부팀원 및 외부위원

○ 위원회 외부 : 참석희망 인권전문가/단체

* 정책자문위원,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인권교육강사단, 인권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참석 희망 여부 조회

라.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바람, 2기 위원회의 업무목표, 인권위 위상 및 역량 강화방안, 인권위와 민간인권진영과의 바람직한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분임 토의 후, 전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의안번호	제05-62호
보 고 연 월 일	2005. 11. 28. (05년 제24차)

보고안건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전략기획안 작성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제 출 자	사무총장
제출년월일	2005. 11. 28.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전략기획안 작성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논의결과 보고

1. 상임위원회 개최 이유

○ 사무처가 제23차 전원위원회(11. 14. 개최)에 상정한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활동경과 및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에 대하여,

○ 상임위원회가 향후 발전기획단 활동 추진방향을 정해서 다음 전원위원회에 보고토록 결정함에 따라, 11. 15. 제22차 상임위원회 개최

2. 상임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05. 11. 15.(화) 17:00~17:50

○ 장 소 : 전원위원회 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상임위원(3명), 사무총장, 발전기획단 3개 팀장 및 간사

○ 안 건

- 발전기획단 향후 추진방향(특별위원회 구성 등)
- 11. 21. 예정된 "창립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관한 사항
- 기타 발전기획단 활동과 관련한 사항

3. 상임위원회 결정사항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전략기획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구성한다.

○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소위원장이 맡고, 나머지 특위 위원은 차기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현 발전기획단 해체 여부를 포함하는 특별위원회 운영방식 및 실무 보좌기구 구성 등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다.

○ 특별위원회 구성 시까지의 발전기획단 활동 결과물은 특별위원회에 제출한다.

○ 11. 21.로 예정된 "창립 4주년 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단, 워크숍의 참석범위와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인권위원은 참석하지 않으며, 사무처가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사무처(안)을 작성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다.)

※ 11. 16.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5개 인권단체로 구성)가 워크숍 불참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워크숍 개최 취소

4. 논의 사항

○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상임위는 특위 위원장을 정책소위원장이 맡고 나머지 특위 위원은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음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법인명등 및대표자)	인권운동사랑방 (담당자: 범용)	주민등록(여권·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소 재 지)	서울.종로.명륜동2가 8-29 3층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전 화 번 호 (모사전송번호)	02-741-5363
			전 자 우 편 주 소	rights@chol.com
정 보 내 용		발전기획단 관련 전원위, 상임위 상정 안건지 및 회의록 일체		
공 개 형 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 령 방 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감면	해 당 여 부	☑해당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이건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2호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자료: <붙임1> 고유번호증)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06년 2월 7일

청 구 인 인 권 운 동 사 랑 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귀 하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자 및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신자 인권운동사랑방

접 수 일 자	2006/02/07		접 수 번 호	06-0040
청 구 정 보 내 용	-발전기획단 관련 전원위 상임위 상정 안건지 및 회의록 일체			
공 개 내 용	-발전기획단 관련 전원위 상임위 상정 안건지 및 회의록 일체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공 개 방 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개일시(기간)			공 개 장 소	
수 수 료 (A)	우 송 료 (B)		수수료감면액 (C)	계 (A+B-C)
3,000원	2,410원		5,410원	0원
수수료산정내역	60장(A4)*50원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위 원 장

담당자 조정희 운영지원팀장 전결 02/14 유인덕

협조자

시행 운영지원팀-575 (2006.02.14.) 접수
우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을지로1가 16 금세기빌딩) / www.humanrights.go.kr
전화 (02)2125 -9701 전송 02-2125-9718 / loveis@humanrights.go.kr / 공개

(뒤쪽)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05년 제19차 전원위원회 회의록

□ 회의 개요

- **일　　시 : 2005. 9. 12.(월), 15:00 ~ 20:00 (5시간)**
- **장　　소 : 전원회의실(13층)**

□ 토론요지

◎ 05-50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활동계획 보고

○○○ 사무처 관계관 보고

○○○ 위원 : 추진배경에 개헌 논의에 대비한다는 표현과 전국민에 대비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

○○○ 사무처 관계관 : 부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회가 있을때 헌법기관화를 도모화해서 무소속 독립기관이라는 위상을 법적으로 관철한다는 내용임. 또 하나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체계를 보다 국제인권법적 관점에 맞추고 현대적 관점과 민주주의 심화발전 관점에 맞춰서 개편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위원회의 기본책무로써 종합적으로 정리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보고 추진해 나가자는 의미임.

○○○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화가 되기 위해서 개헌이 있다면 그 기회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인지?

○○○ 사무처 관계관 : 그러함

○○○ 위원 : 기획단의 임무로 돼있는, 위원회 3개년 업무전략 기획에 대해 한마디 하겠음. 지난번에 NAP 초안을 검토할때 5개년 계획의 NAP 권고안을 작성해 타부처에 권고하기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자체 5개년계획을 마련해 동시에 발표하거나 한발이라도 앞서서 발표하는 것이 순리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사무총장께서도 전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이 기획안은 3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어 5개년 NAP안과는 무관한 독자적인 기획안인지?

○○○ 사무처 관계관 : 그렇지 않음. 위원회 업무전략 5개년 계획을 세우면 더 바람직합니다만 5년이 결코 짧지 않고 2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임기는 2007년 말에 종료되더라도 2008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2006년, 2007년, 2008년에 대한 업무계획을 세워야 함. 그래서 최소한 3개년을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3개년 안을 만들자는 것이고 이것의 밑바탕이 되는 요소는 NAP 5개년 계획안이 됨.

○○○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용 NAP 5개년 계획안과 이번의 발전기획단 3개년 업무전략 기획안은 같은 것인지?

○○○ 사무처 관계관 : 다른 것임. 범국가적 차원에서 인권보호 및 증진 5개년 계획을 만들게 되는데 5개년 계획안에 담긴 과제가 현실로 실현되기 위해서 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하는 것과 인력과 자원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담아내는 것이 위원회의 업무전략 기획 문건임.

○○○ 위원 :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용 5개년 NAP 안은 이번의 위원회 3개년 업무전략기획안에 2년을 보태서 새로 만드는 것인지?

○○○ 사무처 관계관 : NAP 안은 이미 5년 안으로 몇일전 인권위원회 워크숍에서 다뤘던 내용 중심으로 나가는 것임.

○○○ 위원 : 지난 주말에 토의한 것은 국가인권위에서 타부처에 권고하는 안이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권고에 앞서 위원회가 솔선수범할 프로그램에 관한 것임. 남한테 권고하는 것은 5개년 계획으로 만들면서 우리는 3개년짜리 계획으로 한다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함.

○○○ 사무처 관계관 : 우리 위원회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이 3년이어서 축소한 것인데 지금 당장 5년을 만들기는 더 어려워서 3년이라도 만들고 가자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위원 : 발전기획단의 분과구성 원칙을 보면 각 위원회마다 우리 위원회에서 3인, 외부전문가 5명으로 해서 구성원이 8명이 되는데 우리 발전계획을 외부전문가가 다수를 차지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인지?

○○○ 사무처 관계관 : 외부에서 오시는 전문가들은 팀의 자문역할을 할 것이고, 내부의 팀원들도 3인으로 되어 있으나 각 팀에서 팀장이 기획단장인 총장과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부팀원은 새롭게 구성이 될 수 있고 운영방법으로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임.

○○○ 위원 : 실질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안을 만들고 외부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는 수준에서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 사무처 관계관 : 사무처가 중심을 잡고 이끌어 나갈 것임.

○○○ 위원 : 조직혁신평가보고와 관련, 조직혁신팀의 조직개편안을 그에 따른 후속인사와 연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람.

○○○ 사무처 관계관 : 위원회를 혁신함에 있어서 직제개편을 진행중임.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충분한 보고 및 심의시간이 있을 것임. 직제개편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위원회의 전략기획이 있어야 하고, 위원회의 역량발전,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마련, 위원회의 위상을 최소한 현재 이상으로 지켜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그런 차원에서 조직혁신의 커다란 틀 내에서 동시적으로 추진된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위원 : 핵심 목적이 2기 위원회 사명을 구체화하고, 중점 추진 사업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진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설정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주체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봄. 그런데 기획단의 경우는 다양한 진단소스의 하나가 아니라 총괄을 종합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권위원회를 진단하는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볼 때 구성원은 아주 적절하고 더 이상 좋은 구성원이 없다고 보는데 시스템 운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만약에 여러 소스의 하나로 노조에서 보는 인권위원회의 미래, 사무처에서 보는 인권위원회의 미래, 시민단체에서 보는 인권위원회의 미래로 여러 가지 소스에서 보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진단의 주체가 이러한 구성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 위원 : 발전기획단 추진배경과 내용, 그리고 외화방안이 서로 맞지 않다고 생각함. 내용을 보면 발전단의 이름은 업무전략기획단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 추진배경에서 ○○○ 위원 이 설명하신 내용으로 3개년 인권위원회의 방향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조금 다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만약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맞는 제목이 붙여진다면 마지막에 인권위원회 4주년 기념일과 인권기념일에 발표할 내용은 아니라고 봄. 이것은 인권위원회의 업무전략을 제대로 세워서 혁신업무와 연계시켜서 아주 잘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효율성을 더하는 등의 계획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추진목표와 내용과 외화하는 것 사이의 부조화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사무처 관계관 :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위원회의 전략을 기획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시작되고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하고 있음. 그러한 방법으로 기획단의 운영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색해 볼 수 있음. 다만 이 부분을 너무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위원회와 사무처의 관계에서 사무처 단위에서 위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기획을 한 후에 전원위원회에 상정해서 충분히 심의·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러한 원칙속에서 만들어진 안임. 심의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발견되면 사무처에 과제가 떨어질

것이고 또 다른 논의과정을 거칠 것임. 어떤 정책과제나 분야에서든 기본적으로 위원회와 사무처와의 관계가 그러한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봄. 기획단의 운영과정에서 훼손시킬 생각으로 기획단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람. 가급적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들의 생각과 여러 가지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것이며, 또 외부전문가들의 입장에 의해서 위원회의 업무전략이 좌지우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임. 사무처가 그런 입장을 갖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3-4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국가기관으로써 허약하게 밖에 있는 전문가들로 인해서 위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상황으로 사무처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림.

○○○ **위원장** : ○○○ 위원 의견은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이라면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 위원 은 이런 정도의 사무국 중심이라면 발전기획단이라고 하기 보다는 업무전략기획단 정도의 용어가 맞다는 이야기이고,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인권위원회의 날이나 인권위원회 기념일에 바로 발표하기는 어렵고 새롭게 걸러져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됨.

○○○ **위원** : 외화하지 않고 내부공유해서 그에 따라서 업무를 제대로 하면 되는 정도라는 것임. 예컨대 인권위원회 4주년 기념일이나 인권의 날은 인권위원회가 수행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인권전반에 대한 방향성이나 대외적인 큰 방향이나 전략이 나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내용대로라면 아주 핵심적인 지침 가이드라인 정도로 쓰면 된다고 보는 것임.

○○○ **위원** : 지난번 위원회 간부회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었는데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추진배경, 임무, 구성에서와 마지막에 어떻게 외화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잘 맞지 않고 함께 섞여 있어서 많은 혼란을 갖고 온다고 생각함. 앞부분에서 의 취지를 가지고 한다면 인권위원회의 앞으로의 위상과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중점인 기획단의 업무인데 구성에서는 업무전략기획, 위상발전기획, 역량발전기획으로 내부적 역량과 토대를 키우는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12. 10. 이나 11. 25. 에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임. 이것이 위원회의 위상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면 위원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위원들과 사무처라고 보여 지는데 사무처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끔씩 자문위원을 결합해서 자문을 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 팀을 외부와 똑같이 결합을 하는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임. 내부의 부주체에서 위원들은 참여가 없고 가끔씩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짜여져 있는 것은 적절한 구성이 아니라는 제기임.

○○○ 위원 이 말씀하신 NAP 5개년 부분에 대해서는 타기관에 권고안을 낼때 우리의 NAP 5개년이 같이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 일단 3년으로 하지 말고 저는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2기 위원회의 중점적 과제를 세밀하게 세우고 5개년 계획을 업무에서 확대를 하고 업무성격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 **위원** : 기획단의 주체가 인권위원회와 사무처라고 설명을 하셔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보고자료에는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팀장과 최소한의 실무지원만 내부직원이 담당하고 나머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음. 위원회 3인, 즉 팀장 1, 과장급 1, 간사 1인과, 외부전문가 5인 이내로 되어 있음. 실무는 외부전문가들이 하고 위원회는 조정과 연락이나 하고 외부전문가의 안을 수용하는 기구로 전락하는 느낌을 받음. 그런 취지였다면 보고문안작성을 좀더 정교하게 할 필요가 있음. 또 하나는 조직혁신팀의 안을 보면 행정지원국이 없어지는 안인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함.

○○○ **위원** : 스탭들의 의견개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개석상에서 의견을 나누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 **위원** : 조직혁신안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많이 동요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큰 조직혁신안이 진행되고 있는만큼 이 문제는 적절하게 전원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하는 사안임.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 현직

국장 4명이 위원장한테 개선안을 냈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엄청난 기구 개편을 구상하고 있다면 당연히 전원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함.

○○○ **위원** : 이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활동계획에 대한 안이고 조직혁신팀 안은 이 사안과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므로 본건과 같이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나온 의견들을 정리를 하고 다음 사안으로 넘어갔으면 함.

○○○ **위원장** : 조직혁신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음. 발전기획단 활동계획 보고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보고 접수를 하면서 조정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 **사무처 관계관** : 분과활동 결과를 위원회 4주년 기념일이나 인권의 날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전략기획문건을 발표하는 것이고 역량발전기획 문건이나 위상발전기획 문건은 내부에서 공유되고 그것에 따라서 사무총장이 사무처를 이끌어 나간다는 정도가 될 것임. 위원님들의 참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각 분과팀에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할 것임. 업무전략 기획의 경우는 3개년으로 할지 5개년으로 할지를 포함해서 팀에서 더 논의를 하고 전략기획 문건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위원회 전체 입장으로 채택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참여는 물론 있을 것이고, 다른 팀의 경우도 소위원장님과 기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는 기회도 갖을 예정임.

○○○ **위원** : 인권위원회에 결합한지 6개월 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책권고나 의견표명을 하는 것 말고 위원회 자체의 발전과 조직의 여러 가지를 도모하는 안건도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갖는 느낌은 위원장님과 인권위원 10명 가운데 상임위원3, 비상임위원 7명인데 상임위원의 역할과 비상임위원의 역할이 의사결정을 하는것은 같지만 다르다고 생각함. 비상임위원으로써의 입장에서 보면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내부의 논의나 결정을 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구상을 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원

들이 역할을 맡아서 해주는 것이 당연하게 기대되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는 기회를 거치지 않고 오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 안도 발전기획단이라는 이름에 걸 맞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들의 역할이 들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임.

○○○ **위원** : 이 안건이 나오기까지는 간부회의시 상임위원들과 사무처가 충분히 논의한 끝에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을 함. 외부인사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는 것은 위원회의 역량 확대일 수도 있고, 더 많은 의견수렴과 전문성을 끌어들이는 좋은 부분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함. 사무총장님을 중심으로 잡아가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을 함. 위원회의 역할이 그림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바로 인권의 날 발표로 가는 것은 의문이 있음. NAP 5개년 계획안과 3개년 계획으로 가는 것은 위원회가 3년 임기니까 3년 임기 단위로 그림을 그린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의아한 것은 사무처와 상임위원들 간의 대화가 없이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비상임위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론이 분분해 지는 것은 민망한 생각이 있어서 비상임위원들의 입장을 배려해 주셨으면 함. 아까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전략기획단으로써의 역할은 가능하다고 하면 NAP 권고에 맞는 인권위원회의 위상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할지? 사무처의 안이 NAP 권고안과 맞는 내부의 안이라면 위원의 역할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사무처 관계관** :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전략문건들을 보셨을 텐데 2기 위원회에 들어오면서 심각하게 점검을 해봤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심각한 고민 끝에 나왔는가를 검토한 끝에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갖게 됨.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확한 미션과 목표를 찾아서 업무계획과 사업계획을 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내년부터는 명확한 목표와 실천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세부계획을 짜나가는 업무형태를 가져야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소한의 위상이 설정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 끝에 사무처가 내년부터 연간업무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짤 때 기준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받아보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혼란이 없을 것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검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전략문건들을 만들어 나갈 것임.

○○○ **위원** : 조직혁신팀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의제외 발언으로 생각하시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활동보고서 말미에 검토보고 및 활용에 조직혁신팀에 관련된 내용이 있음. 발전기획단은 지금 구성하고 앞으로 활동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반대로 조직혁신팀은 이미 구성을 해서 이미 활동중임. 앞으로 할 것은 보고를 하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은 보고도 안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임.

○○○ **사무처 관계관** : 조직혁신팀에서 1차로 내놓은 직제개편 시안에 대해서 14일까지 내부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보완된 안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것임. 지금 의견수렴중인 안도 상임위원들께 2차에 걸쳐서 사전에 설명드린 바 있음. 오히려 비상임위원들께는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1차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수렴된 안에 기초해서 2차안을 보내드리고 1차안도 인트라넷에 게시되어 있음. 조직개편안은 직제령의 변화를 수반하고 직제령의 안은 전원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므로 당연히 거치도록 되어 있음. 다만 좀더 풍부하고 빈도높게 수행해서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인권단체와도 개정안이 되어 있을때 협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

○○○ **위원** : 계획단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람. 조직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팀제로 바꾸어서 쇄신하겠다는 계획인데 당연히 사전 보고사항임. 혁신팀에 국장이 한분도 안들어가 있는 것이 적절한 구성안이라고 생각하는지?

○○○ **사무처 관계관** : 보고한 것으로 기억함.

○○○ **위원** : 보고된 바는 없고 추가로 논의가 필요하면 진행 이후에 다루도록 함.

○○○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팀은 위원장 방침으로 이러한 일을 해보겠다는 것이고, 이것을 발전기획단에서 연구가 되어서 전원위원

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전원위원회 의결로 하고 업무개선이 필요한 것은 업무개선으로 하고 그때 그때 결과에 따라서 처리가 달라짐. 이 자체는 위원장 결심으로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한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는 합의제기구이므로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함.

○○○ **위원장** : 발전기획단은 이대로 보고를 받아주시고 실무단계의 일로 보시면 될 것임. 진행하면서 필요한 보고는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상정하도록 할 것임. 다만 발전기획단보다는 업무전략기획단 정도로 수정하자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 한번 더 나중에 안건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은 인권위원회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위원 여러분들 아십시오 하고 보고를 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 문건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에는 취소될 수도 있고, 계획내용의 방향 등이 수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제기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임.

○○○ **위원장** : 기획단이 이미 출범을 한 단계임. 외부위원들은 정해졌는지?

○○○ **사무처 관계관** : 일부는 정해졌고 일부는 구성중임.

○○○ **위원** : 구성원으로 외부전문가가 구성이 되는데 위원회에 같이 몸담은 위원들이 배제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12.10. 발표한다고 하니까 위상에 대한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성격을 분명하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셨으면 함. 외부의 자문위원들도 보고를 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에서 받으면 좋겠고 타이틀은 수정하였으면 함.

○○○ **위원장** : 단장이 사무총장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들이 참여하기는 격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타이틀을 업무전략기획단으로 수정하고 12.10. 발표하는 것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고 독자적으로 발표하겠다는 내용이 아님.

○○○ **위원** : 이 부분은 그러한 방식으로 가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발전 구상은 제2기 위원님들께서 심각하게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므로 위원들간에 팀을 구성해서 고민하는 자리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내부적으로 사무처가 갖고 있는 구조가 마지막날 보고되는 것 보다 중간에 여러 채널을 이용해서 보고가 되고, 위원님들도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됨. 정책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더 다르게 책임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음.

○○○ **위원장** : 사무처 수준의 활동이라고 보고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조그만 기구를 만들어서 상위기구로써 점검·논의하는 방법이 있음.

○○○ **위원** : 11, 25.이나 12. 10.인권의 날 내놓기 전에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기 전에도 2번 정도는 위원회에서 중간보고를 거치는 것으로 위원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장** : 중간보고하는 방법으로 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음.

○○○ **위원** :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 이 부분만 정리를 했으면 함.

○○○ **위원장** : 보고를 받아주신 것으로 함.

'05년 제23차 전원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05. 11. 14.(월), 15:00~21:40 (6시간40분)**
- **장　　소 : 전원회의실(13층)**

□ 토론 요지

○○○ **위원장** : 제23차 전원위원회 개회선언

[보고안건]

◎ 05-60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단 활동경과 및 특별위원회 구성계획(안)

○○○ 사무처 관계관 안건 보고

○○○ **위원** : 활동경과의 첫 번째 항목에 보면 9. 12. 전원위원회 보고로 되어 있는데 전원위원회 보고에서 주문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 **사무처 관계관** : 당시 전원위원회 보고를 사무처에서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몇 분께서 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발전기획단 운영에 여러 가지를 반영시키고자 그동안 노력을 해왔음.

○○○ **위원** : 그때 논의가 탐구할 정도가 아니라 기획단의 본질적인 문제에 관련해 지적이 되었음. 심지어는 명칭변경도 결정했다가 사무총장 요구에 의해서 막판에 명칭도 바뀌었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전원위원회에 보고하고 다 추진된 것으로 보고가 됨.

○○○ 사무처 관계관 :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것은 주요한 위원회 발전기획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된 관심사항이었다고 봄. 발전기획단에서는 처음에 시도 할 때는 완성도 높은 발전기획 초안을 작성하려고 준비했습니다만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기에 참여하시는 것이 전체적인 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오늘과 같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조기에 제안하게 된 것임. 그 취지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빨리 해 주십사 사무처에서 요청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기에 참여하시는 것이 위원회 차원의 일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임.

○○○ 위원 : ○○○께서 제기하신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함. 발전기획단이 구성된 배경에서부터 과정과 나중에 공론화를 하는 것 까지에 대한 모든 문제제기가 있었음. 그것을 참고해서 나온 것으로 수용하고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계속 제기되어질 것임.

○○○ 위원 : 제가 제기했던 문제는 외부위원이 발전기획단을 주도하느냐, 내부팀원이 발전기획단을 주도하느냐 하는 것이었음. 일부에서는 밖에서 만든 안을 받아먹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것임. 당시 사무처측은 내부팀원이 주도하는 발전기획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함. 내부팀원들이 그 문제에 관해서 진술해 주시기 바람.

○○○ 사무처 관계관 : ○ 위원께서 말씀하신 염려사항을 기획단 활동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시키고자 노력을 함. 간사가 보고드린 대로 초안은 내부팀에서 만들고 외부위원들에게 점검을 받고 그 과정에서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쳐옴. 내부팀의 평가로써는 내부실무팀의 사무처의 의견이 그동안 우리 위원회의 성과가 충분히 반영된 초안을 만들고자 노력을 해왔고, 대체적으로 그와 같은 성과물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위원 : ○○○ 위원이 제기하셨던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하게 제기되었던 문제는 인권위원회의 발전전략이라고 한다면 인권위원회 내부 구성중에서 두 주체인 위원과 사무처가 함께 처음부터 논의하고,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되었던 부분이었음. 그러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위원회에서는 강하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2페이지에 워크숍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아무리 초안이라고 할지라도 어찌되었던 실무차원에서 이루어졌던 만들어진 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한번도 검토하는 시간이 없이 워크숍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함. 물론 완성된 것을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가져갈 수 있지만 그 전에 내부에서 적어도 인권위원회의 발전전략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책을 방향을 지정하는 것이면 내부적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음. 그런 절차없이 워크숍이 진행되는 것이냐, 그러한 검토작업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보고도 그러한 내용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상정된 측면도 있는데 오늘 짧은 시간안에 이 내용을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됨.

○○○ 사무처 관계관 : 워크숍과 관련해서는 외부단체 전문가들의 요청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11. 25. 위원회 4주년을 기념해서 인권단체와의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또 다른 논의가 있어서 그러한 논의와 발전기획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결합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사무처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림. 오늘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것이고, 이 특위가 앞으로의 전략기획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계획된 워크숍도 위원님들께서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사무처의 의견임. 기획안 초안에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위원님들께서 이와 같은 워크숍 주제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숍 내용을 기획안 초안을 내놓고 하나 하나 검토하는 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인권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앞으로 전략기획적 마

인드에서 인권단체들의 바램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음.

○○○ **위원** : 발전기획단 구성원 인선이 이미 완료된 것인지?

○○○ **사무처 관계관** : 인선이 완성이 되서 지금까지 진행되었음. 사무처 차원에서 해옴.

○○○ **위원** : 인선 과정에서 위원들이 추천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또 인선 결정할 때 상임위원 선에서라도 내부조정이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 **사무처 관계관** : 사무처 단위에서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보여드릴 초안을 만들자는 형식을 취해서 사무총장, 위원장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게 되었음.

○○○ **위원** : 이미 확정된 안인지?

○○○ **사무처 관계관** : 위원회 차원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사무처 단위의 초안에 불과하고, 이제부터 작업이 본격적인 작업임. 또 특위에서 이러한 내용이 일부 부적절하거나 수정이 검토될 사항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상태에서 안을 추스려서 오늘 보고에 이르게 됨.

○○○ **위원** : 경과에서 9. 20. 전원위원회에서 보고 되었던 내용이 제일 먼저 보고되고 있음. 지금까지 이야기된 대로 이 안을 어디서 기초안을 만드느냐도 핵심적인 내용이었지만 2006~2008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전략계획 초안을 발전기획단이 만들어 보자는 결의를 한 바가 없음. 그때 설왕설래 했었던 논의가 업무전략과 관련한 업무혁신전략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인권위원회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메뉴얼을 갖는 것은 별 문제가 없지만 전원위원회에서 향후 3년 기본전략 수립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없고 이렇게 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제기되는 것임. 지금까지의 작업을 무의로 돌

리자는 논의가 아니라 그때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실무적인 진행이 되어 버린 것임.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방향을 다시 잡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사안은 재론되어 진다고 생각함. 업무전략 발전기획단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명칭은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 내용은 업무혁신과 관련되어진 내용으로 수용해 주십사해서 전원위원들이 동의하고 넘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음. 그 회의를 참고로 나온 안이 이른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계획 초안이 나온 것임. 저는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위원** : 저는 다시 한번 전원위원회에 올라와야 되겠지만 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에 의해서 전원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이 안을 검토하고 다시 한번 내용을 만들어서 지난번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서 재상정 하는 것은 어떨지 의견을 제의함.

○○○ **위원** : 저는 구체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에는 그 방법도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지난번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점검하고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당시 ○○○ 위원께서는 법원행정처 예시까지 한 기억이 있는데 전원위원회가 결정을 주도하는 회의가 아니고, 사무총장을 포함해 밖에서 참여하신 분들이 해당분야 전문가이지만 위원회 발전방향을 결정하는데 위원회 자체가 자문기구적인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함.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님께서 제기하셨고, 그렇다면 인정해 주되, ○○○ 위원께서 명칭을 바꾸자는 안을 내셨다가 거의 동의를 했다가 사무총장께서 요구한대로 갔었는데 회의는 회의대로 하고 보고한 것으로 그대로 진행되면 전원위원회에 보고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 **사무처 관계관** :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위원회 일은 사무처에서 안건을 정리해서 원칙적으로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고, 필요한 경우 초기단계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사무처에서 준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당연한 말씀이신데, 발전기획단 관련해서는 전원위원회에서 당시 예정된 다른 사안을 다루지 못하고 지나갈 정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논의했었는데 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로 진행을 하고 나서 특별위원회 구성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함.

○○○ **위원** : 지난번 의견과 잘 검토해서 발전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 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인권위원회의 방향과 정책, 책임은 11명의 전원위원에게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들이 책임도 지고, 관여를 하는 구조 속에서 발전적인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하실 것으로 생각함. 방법에 있어서는 2기에 해당하는 인권위원회 직원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절차를 생각할 때 지난번의 것이 반영이 안됐으니까 다시 올리는 방법이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줄이면 어떨까 생각함.

○○○ **위원장** : ○○○ 위원께서는 전원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가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전원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취지임.

○○○ **위원** : ○○○ 위원께서는 새로 틀을 짜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저도 상임위원들이 맡으면 힘들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될지는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시는 대로 하면 어떨까 생각함.

○○○ **위원장** : 지난번에도 보고안건으로 올라와서 결과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발전기획단에서 연구가 돼서 전원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로 하고, 업무개선이 필요한 것은 업무개선을 하고, 그때 그때 결과에 따라서 처지를 달리할 수 있다, 발전기획단에서는 실무를 담당하고 전원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회의록의 기록이 있음. 오늘 안건도 종전 회의에 기초한 것임.

○○○ **위원** : 이 중요한 문제가 당연히 논의안건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 **사무처 관계관** : 지난번 회의록 말미에 보면 중간보고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심. 오늘은 사무처에서 만들어 놓은 초안을 위원회에서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경과만 보고하고 특위에서 심층적으로 점검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보고안건으로 올림.

○○○ **위원장** :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검토하는 방법과 원안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함.

○○○ **위원** : 보고하는 정도로 받고, ○○○ 위원 의견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검토하고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하자는 의견에 동의함.

○○○ **위원** :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처음부터 계속 반복하는데 위원회 기구에서 전원위원회에서 법과 규칙에 정해진대로 위원회에 관한 기본정책이나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의 실질에 비추어서 여기에 해당된다면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고, 저희들 기구가 전원위원회도 있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성된 것이 법 취지에 비추어서 전원위원회에서 밀도 있는 심의·의결을 위해서 사전에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면 당연히 활용하는 것이 법규의 취지인 것으로 생각함. 사전에 전원위원회에 올라오기 전에 그러한 단계에서 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이면 거쳐서 상정되면 좋겠고, 이 사안도 실질적인 것에 비추어보면 당연히 전원위위원회 심의·의결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발전기획단 활동경과라고만 되어 있지 활동경과라고 하면 벌써 활동이 시작되어서 상당히 진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기획단이 조직되고, 어떤 내용으로 활동해 왔는가 하는 내용자체가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기타 위원회에 전 단계의 심의를 거쳐서 여과해서 올라와서 적어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나 절차부터 다시 반복되는 것은 안됐으면 하는 바램임. 이 사안을 다시 돌아보면 그 형식이 처음부터 안됐으면 추인형식이든 재검토 형식이든 다시 거쳐서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올라와야 되

고, 그 절차가 위원회 보고, 심의·의결이 어떻게 나누어져 올라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고 형식으로 듣고 넘어가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심의·의결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은 전반적으로 맞지 않다고 봄. 전원위원회 회의가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취지도 있으니까 밀도있게 진행이 되었으면 함.

○○○ **위원** :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번 건 뿐만 아니라 사무처와 위원회 간에 협조와 코디네이션이 안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사무처와 위원회의 서로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무처가 의욕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안에 있어서 이미 사무처에서 주도해서 나중에 추인하라고 하는 결과가 빚어져서 거기에서 오는 불만이 일정 정도 위원들한테 있고, 그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은 특히 더 많다고 생각함.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발전기획단 활동과 관련해서 회의록에 보면 맨마지막 페이지에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회의때 타이틀을 업무전략계획단으로 수정하고, 발표하는 것도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타이틀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왔고, 3개년 계획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처음에 이 안건이 논의될 때 사무처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조직혁신 차원의 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장기적인 위원회 전체의 발전이라고 해서 그 사안이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사무처에서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애초에 용도에 맞도록 타이틀을 바꾸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오늘 실제로 올라온 것을 보면 여전히 이전의 틀을 쓰고 와서 거기에서 갭이 생기는 것임. 저는 의욕적으로 일하는 것은 좋으나 그 과정에서 논의한 결과나 외부 시민단체나 전문가 인권단체까지 모두 합쳐서 논의한 과정에서 위원회는 소외되고, 나중에 추인되고 보고만 받는 형식이 불만스러움.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러한 불협화음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해서 위원장께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함.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꼭 12. 10. 발표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함. 왜냐하면 2006년부터 3개년이니까 내년 초에 해도 되니까 이번 기회에 갭과 생각의

차이와 일하는 방식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원천적인 시정이 이루어졌으면 함.

○○○ **위원** : 규정을 가지고 상임위원들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실텐데 이 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비상임위원까지 자세히 보기 힘들고 미리 검토하고 상임위원들께서 검토 한 후에 논의하면 밀도있는 논의가 될 것임. 이 건에 있어서도 위임해 드리지만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일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상의를 하지 않으면 위원장님 권한행사를 하지 않는 것임. 사전에 논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일을 하셔서 지난번엔 논의했던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논의를 거쳤으면 함. 제도에 있는 주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상임위원들과 논의하신 후에 올리면 전체 결의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는 일 없이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건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보실 것을 제안함.

○○○ **위원장** : 우리 규정에 전원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권한을 만들어 놓았는데 상임위원회 권한이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을 위임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임하면 상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거나 논의 할 수 없고 다만 전원위원회에서 위임해 줄때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원** : 상임위원회에 위임한다고 했을때 어느 사항을 위임하는 것인지? 여기서 이야기 하는 특위역할을 대치하는 것을 상임위에 위임하는 것인지, 이것 자체가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작업을 하는 것인지?

○○○ **위원장** : 내용을 검토하려면 특위가 되어야 하고, 운영에 관한 형식을 검토하려면 상임위가 되어야 함.

○○○ **위원** : 특위구성을 제안했는데 사실 보고안건이 아님. 분류에 있어

서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앞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의결안건이나 논의안건이 되어야 함. 다 진행해 놓고 추인해 달라고 하는 축이어서 이번 케이스는 ○○○ 위원이 제안한 대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주시기를 저도 동의를 하고, 다음부터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람.

○○○ **위원** : 운영과 관련한 포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일임을 하거나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일임을 할 수 있고, 제가 가슴아픈 이야기를 드리면 전원위원회에서 4페이지에 외부위원 선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없는 것으로 함. 논의를 해보는 것인데 중요한 사안을 상임위원회와 상의없이 진행시킨 것은 전원위원회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가를 직원들께서 알아 주시기 바람. 이 부분도 없이 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새로운 내용들로써 논의했던 부분들도 포섭을 해서 내용은 전원위원회와 팀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지시사항을 상임위원회에 일임을 하면 팀장이나 사무총장이 지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일임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내용만 검토한다든가, 특위에서 여러 가지 틀을 볼 수 있다든가 하는 것으로 나누지는 않고 상임위원회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위원** : ○○○님이 해석하는 것처럼 상임위원회 운영규정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라는 말을 절차적인 운영을 한정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의문임. 예를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방향에 관한 것은 얼마든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이야기가 누차 많이 나왔는데 인권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면 이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함. ○○○님이 해석하시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면 상임위원회가 심의만이라도 하여 사전에 거르고 의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함

○○○ **위원장** : 소위원회 권한을 침범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조항이 될 수 있음. 이 조항 해석은 간단하지는 않음.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소위

원장으로 해서 특별위원회 구성하면 어떨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용도 검토하고 수정하고 절차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일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함. 이 문제는 상임위원회로 해결하기는 어려움.

○○○ **위원** : 위원회 업무를 그동안 처리해 온 것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위를 구성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되어짐.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했었던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후적인 재정리 작업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5페이지에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2006~2008년에 이르는 업무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비전을 넣고 미션을 이야기 하려고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에서 향후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에 관한 계획을 세운다는 결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의 내용이 무엇이고, 추진하는 주체가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논의와 결의가 된 바 없음. 이미 진행되었지만 향후에도 업무처리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다시 짚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임. 특위로 들어가는 것은 실무단임. 9. 12일자 회의록을 보고자 한 것은 인권의 날에 발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지금은 계획되어 있어서 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 **위원장** : 보고사항으로 적절치 않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함.

○○○ **위원** : 특위는 실무적 차원에서 이 내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앞에서 제기된 문제가 정리된 상태에서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보고사항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추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해 주셨으면 함.

○○○ **위원** : 보고는 하면 그대로 보고이므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임.

○○○ **위원** :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결의할 때 정확하게 결의해 나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위원** : 지금 문제제기는 지난 번에 보고했을때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보고는 일방적으로 했지만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했으면 함.

○○○ **위원장** : 보고는 받고 결의할 부분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 의결을 했으면 전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관철되어야 함. 위원장님께서 이 성격이 업무와 관련된 계획방향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해서 명칭도 바꾸기로 했다가 바뀌지 않았는데 투표하지 않았다고 해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인지?

○○○ **위원** : 보고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안건의 실체가 결국은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된다면 그 전과정에 보고형식으로만 와서 보고되었다고 하고, 보고과정의 논의과정이 수렴이 안된 상태에서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결과물에 의해서 심의·의결안이 왔을때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냐,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런 형식으로 올라와서 전원위원회에서 거부를 해야 하는데 전원위원회에서 그러한 운영형태를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물은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되어야 할 사안이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고, 이번에 보고되고, 다음 전원위원회때 오늘 논의된 것과 관계없이 보고되고, 어느 시점에서 심의·의결로 상정되었을때 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결정해야 될 것인지 의문임.

○○○ **사무처 관계관** : 오늘 만든 것은 초안을 추인해 주십사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초안을 사무처 차원에서 만들었고, 특위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고, 다음 전원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특위에서 올리는 것으로 앞으로 이 일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임. 오늘 여기에서 초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거나 초안의 내용에 대해서 심의해 달라고 요청드리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음. 그와 같은 형식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초안의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특위에서 검토해서 적절치 않다고 평가하면 사무처 차원에서 그대로 따를 것임.

○○○ **위원** : 내용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전에 추진방식에 대한 논의가 없었고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는 것임. 그러한 과정을 밟아서 하는 것이 과연 좋겠는가 하는 것 자체부터 이름을 3개년 발전기획단으로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임. 이미 진행을 해놓고 결과적으로는 사후에 추인해 달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니까 처음에 논의하는 과정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임.

○○○ **사무처 관계관** : 9. 12.에 계속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의결이 되었다고 하면 발전기획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의결했다면 사무처 차원에서는 일을 못했을 것임.

○○○ **위원** : 발전기획단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업무전략기획단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저희는 조직의 효율성과 여러 가지 업무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조직혁신 차원에서 진행한 것으로 이해를 했고, 실제로 계획안은 그대로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임.

○○○ **위원장** : 전원위원회 결의로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있음.

○○○ **위원** :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3개년 업무전략계획을 만들어 보자고 의결한 바가 없음. 적어도 의결이 있어야 초안을 만들텐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용은 무엇을 담을 것인가는 나중에 가면서 하되, 국가인권의 업무전략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점에 관해서도 심의·의결이 있어야 함. 의결을 해놓고 초안까지는 사무처에서 위임해서 사무처에서 만든 것을 가지고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상임위나 특별위원회에서 해보는 형식을 거쳤어야 함. 다른 비상임 위원들의 생각은 그런 정도로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전략 계획을 세워보자는 논의를 상임위원회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논의해서 이러하게 세워보기로 했노라하고 전원위원회에 올려주시면 비상임위원 입장에서는 상임위원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셨으니 왈가왈부 개인적인 의견을 특별히 낼 이유없이 전원위원회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함. 상임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이견이 있어서 다른 비상임위원들까지

의견을 구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이런 형식으로 모든 중요안건을 처리해 주시면 절차운영에 관한 스토리를 매번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는 것 같은데 의욕있는 사무처와 상임위원을 포함한 입장에서 정확하게 운영을 하면 운영의 묘를 기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임. 그 점에 관해서 이해가 있으면 좀더 분발해서 신중하게 검토·논의해서 다음 전원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반복이 안됐으면 하는 생각임.

○○○ **사무처 관계관** : 발전기획안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방안을 현재 전원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그러한 결정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추진방향을 정하신 다음에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추인하는 것으로 나가든지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해서 추진방향을 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임.

○○○ **위원** : 지난번 전원위원회때 업무전략기획단으로 하자는 범주는 정해서 드리는 것은 어떨지? 법에 따르면 사무처에서 하는 것은 사무이므로 규정대로 한다면 사무발전기획단이고 사무전략기획단이나 업무전략기획단에 대한 계획을 범주는 정해 주어야 함.

○○○ **위원** : 관련분야를 정리해서 다음 회의때 올려서 극단적으로는 폐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음 전원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어떤지?

○○○ **위원장** : 발전기획단에서 나온 결과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도 결정할 수가 있고, 내용에 대한 검토는 하지 말고, 추진방향만 정해서 다음 전원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결의함.

'05년 제24차 전원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 개요

- **일　　시 : 2005. 11. 28.(월), 15:00~20:50 (5시간50분)**
- **장　　소 : 전원회의실(13층)**

□ 토론 요지

○○○ **위원장** : 제24차 전원위원회 개회선언

[보고안건]

◎ 05-62 국가인권위원회 발전기획(안) 작성관련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 보고

○○○ **사무처 관계관　안건보고**

○○○ **위원장** : 지난 전원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상임위원회에 위임해서 논의함. 오늘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정책소위원장이 맡고, 나머지 상임위원 2분과 비상임 위원 중 2분으로 5분이 참여했으면 함. 비상임 위원 2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람.

○○○ **위원** : ○○○ 위원 을 추천함.

○○○ **위원** : ○○○ 위원 을 추천함.

○○○ **위원장** : ○○○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 위원, ○○○ 위원, ○○○ 위원, ○○○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 **위원** : 22일로 예정되었던 워크숍이 취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 **사무처 관계관** : 문서로 통보해 온 내용을 읽어 드리면 "오는 11. 17 가질 예정이었던 인권단체들과의 창립 4주년기념 국가인권위원회 발전 기획안 마련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은 귀 위원회의 사정 변경으로 현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인권회의와 소속단체들은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 내용임. 위원회 차원이 아닌 사무처 단위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함.

인권정책분야

▣ 목표(Goal):

▣ 세부목표(Objectives)

1.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신장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3.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체제 강화
4. 인권위의 역량강화

선정 이유

1. 위 세부목표는 현재 위원회가 작성중인 NAP 권고안의 체계를 따른 것임. 1.은 NAP 권고안 제2부(취약계층의 인권보호), 2. 3.은 제3부(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의 내용으로, 본 전략계획의 기본적 성격이 위원회 차원의 NAP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2. NAP 권고안 제2부는, 당사자 스스로 의제 설정이 어려운 분야, 긴급히 구제가 필요한 분야, 국제인권기구가 특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 분야 등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시급히' 사회적 관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사회적 소수자 분야(예: 장애인,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난민 등)에 대한 정책목표, 필요성, 국내 및 국제기준, 핵심추진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 NAP 권고안 제3부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필수적인 인권정책 항목 재천명, 국제기구에서 개선 권고를 받은 분야, 인권보호를 넘어서 인권신장 차원의 적극적인 개념 도입, 인권교육 강화방안, 인권교육 강화방안, 국제사회 및 시민사회 협력체제 구축방안 제시 등 인권신장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4.는 이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역량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추진전략(Strategies)

세부목표 1: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 및 신장

추진전략

1.1. 사회권 연구 역량의 강화

1.2. 선택과 집중 원칙에 의한 특정 영역 사회권 분야의 정책개발

1.3. 사회권에 맞추어진 인권상황실태조사와 그 활용

세부목표 2: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추진전략

2.1. 정부의 인권NAP의 수립과 그 이행과정의 모니터링 및 적극적 자문

2.2.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소개 강화

2.3.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법제개선

2.4. 중·단기 과제로서의 인권제도의 선택과 그에 맞는 대책 강구

2.5. 관련기관과의 활발한 정책 협의

2.6. 인권침해 가능 기관의 관행 개선을 위한 인권보호지침(예: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초기 단계의 인권보호지침" 등)의 개발과 보급

세부목표 3: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체제 강화

추진전략

3.1.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 협력 활동 강화

3.2. 국제인권기구와의 상시적 협력체제

3.3. 국내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체제의 정비 및 강화

세부목표 4: 인권위의 역량강화

4.1. 인권위 구성원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의 설치

4.2. 연구모임 및 학습 동아리 운영

4.3. 인권연구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4.4. 인권전문가들에 대한 과감한 문호 개방

4.5. 인권자료의 효율적인 수집과 활용 극대화

인권침해 조사·구제 분야

▣ 목표(Goal): 침해구제와 예방활동 병행으로 인권취약분야 인권수준 향상

▣ 세부목표(Objectives)

1. 신속·공정한 사건처리 체계 구축으로 진정인 만족도 제고
2. 검·경, 교정 등 구제 정착단계 분야는 개별진정사건 처리와 병행하여 관행·제도 개선에 주력
3. 군대내 인권, 다수인보호시설 등 제1기에 충분한 관심을 집중하지 못했던 분야는 인권개선 기반 조성에 주력
4. 직권·방문조사 확대 실시로 인권침해 원인해소 주력
5. 인권교육, 홍보 등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
6. 위원회 권고사항 사후 관리 체계 확립

선정이유

1. 인권침해조사국 업무의 90% 이상이 진정사건처리 업무이고, 국민들도 대부분 진정제기를 계기로 직접 인권위원회와 접촉을 하게 되며, 진정당사자들은 사건 처리 과정과 결과로 인권위원회 자체를 평가하게 되므로 조사관들의 신속한 사건처리 및 결과통보, 조사 진행안내 서비스 제공, 조사과정에서도 인권위원회의 특성이 나타나는 방법으로 조사 진행⇒이를 통하여 진정 당사자들의 신뢰감, 만족감 증진/인권위원회의 존재감, 위상 강화에 기여
2. 그동안 진정사건 처리실적이 쌓여 이미 많은 권고가 이루어졌고 문제점들이 파악된 분야의 경우에는 큰 틀에서 문제점을 조명해 보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 노력 필요
3. 2기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할 분야로, 영역이 광범하므로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3기에는 실질적 개선 추진
4. 1기에서는 개별 진정사건 처리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직권·방문조사 활동이 적었고,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2기에서는 중장기 계획 하에 체계적인